

호서교육인증제 운영 규정

제정 2020. 3. 1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1조 (목적)에 부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전공·교양·융합·비교과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6.)

제2조 (정의) 호서교육인증제란 전공·교양·융합·비교과 교육의 체계적 질 관리를 위해 본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을 의미한다.(개정 2022. 9. 6.)

제3조 (인증 영역) ① 교과교육(전공·교양·융합) 부문은 교육과정 편성 내용 및 교육과정·교과목 운영 결과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2. 9. 6., 2023. 2. 1.)

② <삭제 2022. 9. 6.>

③ 비교과교육 부문은 본 대학교 CanDo시스템에 등록된 비교과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2. 9. 6.)

④ 호서교육인증제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우 인증영역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 (인증 주기) ① 호서교육인증제의 인증 평가는 교육과정계획인증과 교육과정운영 결과인증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개정 2023. 2. 1.)

② 교육과정계획인증은 교과교육(전공·교양·융합)부문에 대하여 교육과정 편성 주기인 4년을 기준으로 인증을 시행한다.(신설 2023. 2. 1.)

③ 교육과정운영결과 인증은 교과교육(전공·교양·융합)과 비교과 교육의 교육과정운영결과 산출 시기를 고려하여 1년 주기로 시행한다.(신설 2023. 2. 1.)

④ 전공·교양·융합·비교과 교육의 인증 부문별 세부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23. 2. 1.)

제5조 (인증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① 교과교육(전공·교양·융합)부문을 인증평가 결과에 따라 인증, 수정 인증, 재심사 인증, 미인증으로 인증의 단계를 구분하고 비교과교육 부문은 인증, 조건부 인증, 미인증으로 인증의 단계를 구분한다.(개정 2022. 9. 6., 2023. 2. 1.)

② 인증평가 결과 미인증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 의견 및 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한 차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 인증을 신청하여 재심사를 통과하면 운영을 유지할 수 있다.(개정 2022. 9. 6., 2023. 2. 1.)

③ 인증평가 결과 및 심의·의결에 따라 인증에 해당되는 경우, 호서교육인증제 인증서를 발급한다.(개정 2022. 9. 6.)

④ 기타 인증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세부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22. 9. 6.)

⑤ 비교과교육 부문은 호서교육인증제 인증 평가 결과에 따른 CanDo마일리지 차등 지급에 대한 세부 적용 방법은 CanDo마일리지 운영부서에서 결정한다.(신설 2023. 2. 1.)

제6조 (주관 및 지원부서) ① 호서교육인증제 운영 주관 부서는 교육성과관리센터로 한다.

② 호서교육인증제 운영의 지원부서는 학사팀, 기초교양교육팀, 비교과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실무 부서로 한다.

제7조 (호서교육인증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호서교육인증제 운영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호서교육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다

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9. 8., 2022. 9. 6.)

1. 위원장은 학사부총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2. 교육혁신처장, 단과대학장, 인재개발처장 및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학생대표를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총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내부 및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사팀장으로 한다.
5.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상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인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22. 9. 6.)

1. 위원회 및 호서교육인증제 운영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전공·교양·융합·비교과교육과정의 인증평가에 대한 심의·의결
3. 호서교육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
4. 호서교육인증제 인증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불이행에 대한 처분 결정

제8조 (기타) 인증평가를 위한 내·외부 평가위원 구성, 운영결과보고서 작성편람, 평가편람 등 호서교육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3. 2. 1.)

부 칙(2020. 3. 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련규정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함께 호서교육인증제 운영지침,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2020. 9. 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